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11. 16.
행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1. 1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11. 12.

다. 상정일자: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2026. 11.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가. 제안이유

○ 마포구립 체육시설인 한서생활체육관의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마포구민에 대하여 개인사용료 중 이용자 추가사용료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개인사용료 중 기본타석료와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별 사용료 등을 규정한 별표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1조제1항제3호) 한서생활체육관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 감

면 규정 신설

○ (안 제11조제8항) 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

○ 체육시설 사용료 등 별표 정비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입법예고 : 2026. 10. 15. ~ 2026. 11. 4.(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민이 한서생활체육관의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사용료 중 이용자 추가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개인사용료 관련 규정과 체육시설별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1조제1항제3호)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한서생활체육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추가사용료 전액 면제 규정 신설

○ (안 제11조제8항) 현행 “수강료”를 “개인사용료 중 기본타석료와 수강료”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명확화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체육시설별 이용기준 및 사용료 등 관련 사항 정비

3 법적 타당성 및 형평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구민의 이용 편의 증진 등 을 고려할 때 구민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마포구민과 타 지역 주민 간 이용요금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과 감면 기준의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면제 범위가 개인 사용료 전체가 아닌 이용자 추가사용료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민의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자 추가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민과 타 지역 주민 간 이용요금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감면 기준의 합리성 및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른 시설 운영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당인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당인동)
	다목적체육관	요가, 댄스, 음악줄넘기, 호신술, 유아체육, 팝송, 노래교실, 바둑교실, 토탈공예, 서예교실, 도자기 교실등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건강관리센터	남·여 사우나	
공덕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19 (공덕동)
한서 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음악줄넘기, 스포츠댄스, 유아·청소년 체육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바길 53(염리동)
	다목적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 18세 어린이 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볼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당인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 관리센터	성인·청소년	7,000 ~ 12,000	
		어린이	6,000 ~ 12,000	
공덕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한서 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스크린 파크골프장	성인·청소년 ·어린이	<기본타석료> 12,000 ~ 20,000 <이용자 추가사용료> 3,000 ~ 5,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4.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기본타석료는 2시간, 1타석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 추가사용료는 이용자 1명당 부과한다. 1타석당 이용인원은 4명 이내로 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당인구민 체육센터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실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GX3· 다목적실1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GX1· GX2· 다목적실2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실3	10,000 ~ 30,000	20,000 ~ 40,000	
한서 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스크린 파크골프장	(체육경기 시) 평일 : 70,000 ~ 100,000 토요일·공휴일 : 8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타석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